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출년월일: 2023. 3. 8. 의안 9-124 버호 제 출 자: 안산시장 □ 제안이유 ○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개정된「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22.11.14.)에 맞춰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 제5조 제2항의 별표2(재난수습 주관부서)와 제8조 제1항 제1호의 별표3(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및 별표4(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일부를 현재 부서 명칭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별표 2, 3, 4의 부서 명칭 변경 사항 반영 □ 개정조례안 : 붙임1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3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붙임4 □ 사전예고(결과) : 붙임5 ○ 입법예고 : 2022. 1. 25. ~ 2022. 2. 14. (21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6

○ 방침결정문 : 붙임7

〈 붙임 1 >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5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재난수습 주관부서
1. 교육부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청소년과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라.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정보통신과
3. 외교부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자치행정과
4. 법무부	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의정법무과
5. 국방부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시민안전과
6. 행정안전부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회계과
7. 문화체육관광부	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8.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농업정책과
9. 산업통상자원부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에너지정책과
10. 보건복지부	가. 보건의료 사고	양 보건소
11. 환경부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환경정책과 정수과 환경정책과 해양수산과

	마. 황사	환경정책과
	바. 미세먼지	환경정책과
12. 고용노동부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기업지원과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건설도로과
	나. 고속철도 사고	철도교통과
	다. 도로터널 사고	건설도로과
	라.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정수과
13. 국토교통부	마. 육상화물운송 사고	대중교통과
	바. 지하철 사고	철도교통과
	사. 항공기 사고	철도교통과
	아.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철도교통과
	자.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건축디자인과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14 STALE 11 H	 나. 조수(潮水)	레시 논 네
14. 해양수산부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해양수산과
	라. 해양 선박 사고	
	가.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	시민안전과
	구는 제외한다)	
	나. 화재·위험물 사고	
1도 레기시키 H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15. 행정안전부	라.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마.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	<i>"</i>
	뭄・폭염・한파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	
	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16. 금융위원회	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정보통신과
17 이기러시키이시키	가. 원자력안전 사고	기미시키카
17. 원자력안전위원회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시민안전과
18. 문화재청	가.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예술과
10 12 2	가. 산불	노 기 기
19. 산림청	나. 산사태	녹지과
20. 해양경찰청	바.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해양수산과
21. 질병관리청	감염병 재난	양 보건소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안산시 비상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부시장				
총굍	발조정	d 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 주	관부서 국·소·센터	·본부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	를 담당하는 부서	의 장			
			인 원		총 6+α명			
			반 장	재	난종합상황실 팀장 또는 담당			
			1) 상 황 관 리 총괄반 (5명)	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5명)	·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종합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 총 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 원 2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정보통신과			
실	무	반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시설관리부서(건설도로과, 하수과 등)			
2	'	Ľ	2)협업기능반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에너지정책과			
			(a)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공보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시민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지원반	・양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타) 수색, 구조· 구급반	• 안산소방서

-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시장	시장				
차		장	부시장	부시장				
총된	발조건	성관	재난안전을 총	=괄하는 담당 국정				
통	제	관	해당 재난 주	관부서 국·소·센터	·본부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두	'를 담당하는 부서	의 장			
			인 원		총 13+α+β명			
			반 장		과장급 1명			
			1) 상 황 관 리 총괄반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5명)	·재난상황관리반 직원 5명 재난종합상황실 직원 1명,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실	무	반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주관부서 직원 2명			
			(12명)	대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3명)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주관부서 직원 2명			
				라) 행정지원팀 (1명)	・총무과 직원 1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시설관리부서(건설도로과, 하수과 등)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에너지정책과
2)협업기능반 (a)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공보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시민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지원반	・양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타) 수색, 구조 •구급반	• 안산소방서
지역 재난된	관리책임기관(β)	• 육군제2506부대, KT, 한국전력, 한국전기안 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삼천리, 한국 산업단지공단 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 견 직원

-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 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 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Г`ċ		- / 11				
본	부	~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	소조]관	재난안전을 총	:괄하는 담당 국징	ļ-		
통	제	관	해당 재난 주	관부서 국·소·센터	·본부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	를 담당하는 부서	l의 장		
			인 원		총 18+α+β명		
			반 장		과장급 1명		
			1)상황관리 총 괄 반	가) 재난정보 수집 ·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6명)	·재난상황관리반 6명 재난종합상황실, 재난 총괄부서, 재난수 습 주관부서 직원 각 2명		
				, - ,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17+α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7명)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주관부서 직원 5명		
실	무			라) 행정지원팀 (1명)	・총무과 직원 1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2)협업기능반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정보통신과		
			(a)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시설관리부서(건설도로과, 하수과 등)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에너지정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공보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시민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지원반	・양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안산소방서
지역 재난관	난리책임기관(β)	• 육군제2506부대, KT, 한국전력, 한국전기안 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삼천리, 한국 산업단지공단 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 견 직원

-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 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 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지진(해일)·화산 시 편성기준

가. 안산시 비상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	괄조정	성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 주관부서 국·소·센터·본부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인 원		총 6+α명
		반 장	재	난종합상황실 팀장 또는 담당	
			1)상 황 관 리 총괄반 (5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 상황관리팀(5명)	재난상황관리반 5명재난종합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 총 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 원 2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반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시설관리부서(도로교통과, 하수과 등)
실	실 무 변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에너지정책과
			2)협업기능반 (a)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공보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아) 교통대책반 • 철도교통교 자) 의료·방역		• 시민안전과	
			•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지원반	・양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안산소방서

-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 영할 수 있다.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시장					
_ 차	<u> </u>			부시장				
·	サマス							
통	= 			관부서 국·소·센터·钅	보보이 자			
			,, , , , , ,					
담	당	반 		¹ 를 담당하는 부서의				
			인 원		총 13+α+β명			
			반 장		과장급 1명			
				나) 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전 파, 재난상황관 리팀(5명)	·재난상황관리반 직원 5명 재난종합상황실 1명, 재난 총괄부서 2 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총 괄 반	다)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주관부서 직원 2명			
			(12명)	라)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3명)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주관부서 직원 2명			
				마) 행정지원팀 (1명)	・총무과 직원 1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실	무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정보통신과			
			2)협업기능반	라) 시설피해	•시설관리부서(도로교통과, 하수과 등)			
			2)智智/ Tott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에너지정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공보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시민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지원반	· 양 보건소
차) 지원봉사 지원	• 자치행정과
및 관리반	7/1/8/8/4
카) 사회질서	·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유지반	• 한번경철시, 경특경철시
타) 수색, 구조・	• 안산소방서
구급반	• 1.12.18.71
	• 육군제2506부대, KT, 한국전력, 한국전기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삼천리,
시크 세인선디섹임기선(P)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역재난관리책임
	기관 파견 직원

-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 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 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71 0		"							
본	부	장	시장	기장						
차		장	부시장	부시장						
총골	발조정] 관	재난안전을 층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 주	반부서 국·소·센터·본부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5	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인 원		총 18+α+β명					
			반 장	과장급 1명						
실	무	반	1)상황관리 총 괄 빈 (17+α명)	파, 재난상황관 리팀(6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각 2명					
				다) 상황보고서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작성팀(3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라)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7명)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주관부서 직원 5명
	마) 행정지원팀 (1명)	・총무과 직원 1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시설관리부서(건설도로과, 하수과 등)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에너지정책과
2)협업기능반 (α)	-1/ 11-1 & &	• 공보관
(4)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시민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지원반	・양 보건소
	차) 지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안산소방서
지역 재난	관리책임기관(β)	• 육군제2506부대, KT, 한국전력, 한국전기 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삼천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역재난관리책임 기관 파견 직원

-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 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

- 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4]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급	말조정	- 성관	~~~~~~~~~~~~~~~~~~~~~~~~~~~~~~~~~~~~~						
통	제	관	해당 재난 주관부서 국·소·센터·본부의 장						
담	당	 라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인 원		총 10+α+β+γ명 				
			반 장		과장급 1명				
				가) 상황관리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1)재난상황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총 괄 반	나) 수습상황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9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 자원순환과				
				환경정비반 다) 긴급 통신	,				
실	무	반		지원반 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 시설관리부서(건설도로과, 하수과 등)				
				응급복구반	· 시설턴디구시(신설도도파, 야구파 등) 				
			2)협업기능	마) 에너지 공급	세고 [-] -] -]				
			반(a)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에너지정책과				
				바) 재난수습	7.1.0				
				홍보반	• 공보관				
				사) 재난관리자원	• 시민안전과				
				지원반	카드그트과 네즈그트과				
				아) 교통대책반	•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자) 의료·방역	· 양 보건소				
				서비스 지원반					

차) 지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안산소방서
재난대응협업반(β)	• 육군제2506부대, KT, 한국전력, 한국전기안 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삼천리, 한국산 업단지공단 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현장지원반(γ)	·해당 재난관리 실·국 소속 직원

-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관 실·과	시민안전과
입	실·과장	시민안전과장
H	직위·성명	박구범
 안	담당.팀장	사회재난팀장
1	직위·성명	김혜련
자	담당자	강명철(3119)

〈 붙임 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재난수亩 주관부서(제5조제2항 관련	1)	[별표 2]	<u>재난수슙 주관부서(제5조제2항</u>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재난수습 주관부서
1. 교육부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 생한 사고	교육청소년과	1. 교육부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 생한 사고	교육청소년과
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혼신 라.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정보콘텐츠과	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혼신 라.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정보통신과
3. 외교부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신성장전략과	3. 외교부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자치행정과
4. 법무부	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혁신법무과	4. 법무부	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의정법무과
5. 국방부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시민안전과	5. 국방부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시민안전과
6 행정안전부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회계과	6 행정안전부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회계과
7. 문화체육 관광부	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 생한 사고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7. 문화체육 관광부	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 생한 사고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8. 농림축산 식품부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농업정책과	8. 농림축산 식품부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농업정책과
9. 산업통상 자원부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 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에너지정책과	9. 산업통상 자원부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 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에너지정책과
10 보건복지부	가. 보건의료 사고	양 보건소	10 보건복지부	가. 보건의료 사고	양 보건소
11. 환경부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한정한다) 마. 황사 바. 미세먼지 	환경정책과 정수과 환경정책과 해양수산과 환경정책과	11. 환경부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한정한다) 마. 황사 바. 미세먼지 	환경정책과 정수과 환경정책과 해양수산과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12 고용노동부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기업지원과	12 고용노동부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기업지원과

13. 국토교통부			
14. 해양수산부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가. 공동구(共同溝) 재난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나. 화재·위험물 사고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 선등의 수난 사고 라.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제 마.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 · 지진·화산·낙뢰·가뭄·폭염·한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대한전과 보신 인접 국가 방사능 누가 전원하고 보신 인접 국가 방사능 무기관에술과 무화예술과 나는 신점청 가. 산불나 산사태 무지과 해양수산과 전원하고 보신 등의 수난사고	13. 국토교통부	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도로터널 사고 라.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마. 육상화물운송 사고 바. 지하철 사고 사. 항공기 사고 아. 항공운송 마비 및 항	교통정책과 건설도로과 정수과 대중교통과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
14. 해양수산부 다.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가. 공동구(共同溝) 재난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나. 화재·위험물 사고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 선 등의 수난 사고 라.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 재 마.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 · 지진·화산·박 뢰·가뭄·폭염·한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로서 다른 자산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기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16. 금융위원회 가.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예술과 17. 원자력 안전위원회 가.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예술과 18. 문화제청 가.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예술과 19.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대 등에 하양어서 발생한 유도선등의 수난사고			건축디자인과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나. 화재·위험물 사고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 선 등의 수난 사고 라.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 제 마. 풍수해(조수는 제외한 다)·지진·화산·낙 뢰·가뭄·폭염·한과 로 인한 재난 및 사고 로서 다른 재난관리주 관기관에 속하지 아니 하는 재난 및 사고 16. 금융위원회 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기가 원자력 안전위원회 가. 문화재 시설 사고 기가 사실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 문화예술과 기가 사실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 문화예술과 기가 사실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등 문화예술과 기가 산불 나. 산사태 기가 사실 가고 기가 가는 사내	14. 해양수산부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해양수산과
17. 원자력 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	15.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나. 화재·위험물 사고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 선 등의 수난 사고 라.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 재 마. 풍수해(조수는 제외한 다)·지진·화산·낙 뢰·가뭄·폭염·한파 로 인한 재난 및 사고 로서 다른 재난관리주 관기관에 속하지 아니	,,,,,,,,,,,,,,,,,,,,,,,,,,,,,,,,,,,,,,,
17. 원자력	16. 금융위원회	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정보콘텐츠과
18. 문화재정 7. 산불 나. 산사태 20. 해양경찰청 바.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 선 등의 수난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	시민안전과
19. 산림청 나. 산사태 녹지과 나. 산사태 20. 해양경찰청 바.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 선 등의 수난사고	18. 문화재청	가.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예술과
20. 해양경찰청 선 등의 수난사고	19. 산림청	,	녹지과
21. 질병관리청 감염병 재난 양 보건소	20. 해양경찰청		해양수산과
	21. 질병관리청	감염병 재난	양 보건소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 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13. 국토교통부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도로터널 사고 라.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마. 육상화물운송 사고 바. 지하철 사고 사. 항공기 사고 아.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자.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건설도로과 철도교통과 건설도로과 정수과 대중교통과 철도교통과 철도교통과 철도교통과
14. 해양수산부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해양수산과
15. 행정안전부	가. 공동구(共同溝) 재난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나. 화재·위험물 사고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 선 등의 수난 사고 라.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 재 마. 풍수해(조수는 제외한 다)・지진・화산・낙 퇴・가뭄・폭염・한파 로 인한 재난 및 사고 로서 다른 재난관리주 관기관에 속하지 아니 하는 재난 및 사고	시민안전과
16. 금융위원회	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정보통신과
17. 원자력 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 출 사고	시민안전과
18. 문화재청	가.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예술과
19.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녹지과
20. 해양경찰청	바.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 선 등의 수난사고	해양수산과
21. 질병관리청	감염병 재난	양 보건소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 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안산시 비상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필	발조기	성관	재난안전	을 총괄하는 담다	당 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남	난 주관부서 국·소	└·센터·본부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님	난업무를 담당하는	는 부서의 장
			인 원	:	총 6+a명
			반 장	재난종합상회	황실 팀장 또는 담당
			관리 총	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전 파, 재난상황관 리팀(5명)	원 1명, 자연재난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나) 재난현장환경정비반	복지정책과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정보콘텐츠과
				라) 시설피해	· 시설관리부서(건설도
실	무	반	2)협업	응급복구반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로과, 하수과 등) ・에너지정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대변인
			(ω)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시민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양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타수색구조・구급반	• 안산소방서

비고(근무방법)

-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안전과에 기.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안전과에 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 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 정하여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별표 3]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 가. 안산시 비상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굍	· 조건	정관	재난안전	을 총괄하는 담당	당 국장
통	제	관	해당 재	난 주관부서 국·소	는·센터·본부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	<u></u> 산업무를 담당하는	는 부서의 장
			인 원		총 6+a명
			반 장	재난종합상회	황실 팀장 또는 담당
			관리 총	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전 파, 재난상황관 리팀(5명)	원 1명, 자연재난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나) 재난현장	복지정책과자원순환과
				환경정비반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시설관리부서(건설도
실	무	반	2)협업	응급복구반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로과, 하수과 등) ・에너지정책과
			기능반 (a)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공보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시민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 양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타선·감·감반	• 안산소방서

- 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 |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 정하여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1단계

1) 상황 관리 등관반 (12명) 전에 대한 충관부서 직원 2명 재난수읍 주관부서 직원 2명 대한 송관비 (12명) 대한 충관부서 직원 2명 대한 상황관리종관 및 사원반 다) 긴급 생활 안정지원반 다) 긴급 통신 지원반 다) 긴급 통신 지원반 다) 신설피해 응급복구반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부구반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부구반 바)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다) 교통대책반 대원인 사가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나)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다) 교통대책반 대원인 사기원방사지원 및 관리반 차) 지원방사지원 및 관리반 차) 지원상사지원 및 관리반 차) 지원상사 전원 관계상원리 한국산 단진공단 등 지역재 관리책임기관 파건 관리 관리 관리 관리책임기관 파건 관리	본 부 장	시장		
등 제 판 해당 재난 주관부서 국소·센터·본부의 장 단 당 판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인 원 반 장 과장급 1명 가) 재난성황 관리는 수집 - 분석 및 전파, 재난송황관리반 직원 5명 관리팀(5명) 가() 생황보리는 후관부서 직원 2명 가() 상황보리를 및 상황분석 평가됨 (3명) 다() 상황보리를 및 상황분석 평가됨 (3명) 다() 간급 생활 관기원(명) 가() 긴급 생활 관기원(명) 가() 긴급 생활 관기원(명) 가() 긴급 생활 관기원(명) 가() 긴급 생활 관기원(명) 가() 건급 생활 관기원(명) 가() 건급 생활 관계원반 나() 제난현장 환경정비반 다() 긴급 통신 지원반 라() 신설피해 응급복구반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산수급 함보반 사() 재난관리자원 자연관과 자수과 등)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가() 기료 생활 가() 기료 생활 환경정비반 가()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가()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가() 시설피해 양급복구반 가() 시설교하여 유기원(명) 자연수급 환보반 가() 개단관리자원 자연관과 자연 기능복구반 가() 기료 방역 서비스 지원(만 차() 자연봉사 지원 및 관리반 가() 사회절서 유기반 타() 수색, 구조 구급반 자 관광선기안 공사, 한국가스안찬 사(, ㈜산천리, 한국산 단지공단 등 지역재 관리책임기관 파건	차 장	부시장		
단 당 판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인 원 환 강 과장급 1명 가) 재단정보수집 · 재난상황관리반 직원 5명 재난중합상황실 직원 1명 지난성황 관리팅(5명) 한 상황보고서 총괄반 (12명) 다) 상황보고서 속성팅(3명) 다) 상황보고서 속성팅(3명) 다) 생황고리를 (3명) 라) 행정지원팀(1명) ** 추관부서 직원 2명 다) 생정지원팀(1명) ** 추관부서 직원 2명 다) 생정지원팀(1명) ** 추관부서 직원 2명 다) 생정지원팀(1명) ** 추관부서 직원 1명 ** 구관부서 직원 2명 다) 생정지원팀(1명) ** 추관부서 직원 2명 다) 개난광활 안정지원반 다) 긴급 생활 안정지원반 다) 건급 생활 안정지원반 다) 건급 등신 지원반 라) 시설과해 응급복구반 마) 에너지 장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마) 에너지 장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마) 제난수습 홍보반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자) 의료·망역 서비스 지원한 자) 의료·망적 자) 의료·망역 서비스 지원한 자) 의료·망적 자) 의료·망역 서비스 지원한 자) 의료·망적 자) 의료·망역 서비스 지원한 자) 의료·망적 자) 의료·망역 서비스 지원한 자) 의료·망역 서비스 지원한 자) 의료·망역 서비스 지원한 자) 의료·망적 자) 의료·망역 서비스 지원한 자) 의료·망역 서비스 지원한 자) 의료·망역 서비스 지원한 자) 의료·망적 자원 등한 자원 등 자원 등한 자원 등 자원 등 자원 등한 자원 등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	장
인 원 * 13+α+β명 * 과장급 1명 * 가 재단상황관리반 직원 5명 재단중합상황실 직원 1명 재단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대단수습 주관부서 직원 1명 가 생형[(3명) * 구관부서 직원 2명 * 가 생형[(3명) * 구관부서 직원 2명 * 가 생형보여 평가념 (3명) * 구관부서 직원 2명 * 가 간급생활 안정지원팀(1명) * 총무과 직원 1명 * 구관부서 직원 2명 * 가 간급생활 안정지원팀 * 구관부서 직원 2명 * 가 간급생활 안정지원반 * 가 기급급생활 안정지원반 * 가 기급급생활 안정지원반 * 가 원순환과 * 간 기급급 통신 지원반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과, 하수과 등)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가 지난수습 홍보반 * 사 기관본리자원 지원반 * 가 의료 방역 서비스 지원반 차 기원봉사 직원 및 관리반 차 기원봉사 직원 및 관리반 가 의료 방역 서비스 지원반 차 기원봉사 직원 및 관리반 가 의료 방역 서비스 지원반 차 기원봉사 직원 및 관리반 가 의결서 유지반 타 수색, 구조 · 안산소방서 * 우근체2506부대, K 한국건의, 한국산 단지 공단 등 지역재 관리책임기관 과건 * 관리 * 관리책임기관 과건 * 관리 * 관	통 제 관	해당 재난	주관부서 국·소·센터	터·본부의 장
반 항 과장급 1명 가) 재단정보수집 · 재단상황관리반 직원 5명 전혀 및 전파, 재단상황 관리팀(5명) 1) 상황 관리통관방 (12명) 나) 상황보고서 - 작성팀(3명) · 자관부서 직원 1명 작성팀(3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대상황단석 평가템 (3명) · 총무과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안정지원반 나) 재단현장 환경정비반 나) 재단현장 환경정비반 나) 재단현장 환경정비반 나) 재단현장 환경정비반 다) 긴급 통신 지원반 라) 시설과해 응급복구반 라) 시설과해 응급복구반 라) 시설과해 응급복구반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마) 에너지 장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가) 사회 제상 수업 기원반 사) 재단관리자원 지원반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자) 의료·명역 서비스 지원반 가) 사회질서 유지반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유군제2506부대, K 한국전력, 한국건이안 공사, 한국가스안전 사, ㈜산천리, 한국산 단지공단 등 지역재 관리책임기관 파건	담 당 관	해당 재난입]무를 담당하는 부	서의 장
1) 상황 관리 등본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반 직원 5명 재난수급 주관부서 직원 2명 재난수급 주관부서 직원 2명 자산 충활보고서 작성팀(3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사상통원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3명) - 추관부서 직원 2명 가행정지원팀(1명) - 총무과 직원 1명 무한정지원반 나에 개난현장 환경정비반 다이 긴급 통신 지원반 라이 세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박 (a) 무한 세난수급 흥보반 사에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가 의료·명역 서비스 지원반 라이 교통대책반 자의로·명역 서비스 지원만 차이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카 사회질서 유지반 타이 수색, 구조 · 구급반 - 안산소방서 무급한 국가는 안산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사용 (주산 전기 안 공사, 한국가스안전 사, (취삼천리, 한국산 단지·공단 등 지역재 관리책임기관 파건 - 한지·공단 등 지역재 관리책임 - 한지·공단 등 지역재 관리책임 - 한지·공단 등 지역재 관리 - 한지·공단 등 지역재 관리 - 한지·공단 등 제 · · · · · · · · · · · · · · · · · ·		인 원	ৰ	÷ 13+α+β명
1) 상황 관리 등관반 (12명) 가 재단정보수집 - 본석 및 전파, 재단상황 관리팀(5명) 고맹 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자상팀(3명) - 자단 총괄부서 직원 1명 사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3명) - 총무과 직원 1명 가 인급생활 안정지원팀(1명) - 총무과 직원 1명 가 인급생활 안정지원반 나 개단현장 환경정비반 다 인급 통신 지원반 다 시설과해 의급부가 인급 등신 지원반 다 시설과해 의급부가 반 대한이 내지 장급 피해시설 기능부구반 바 재단관급 후보반 사 재단관리자원 지원반 다 의료 방역 서비스 지원반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카 사회질서 유지반 다 수색, 구조 구급반 다 안소방서 무구급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자수가 관단 전기 안 공사, 한국 전기 안 공사, 한국 전기 안 공사, 한국 가스안전 사, (취삼천리, 한국산 단지 공단 등 지역재 관리책임기관 파건 반 가 공단 등 지역재 관리책임기관 파건 가 관단 등 지역재 관리책임기관 파건 가 관리책임기관 파건 관리책임기관 파건 가 관리책임기관 파건 관리책임기관 파건 가 관리책임기관 파건 관리책임기관 파건 가 관리책임기관 제 관리적 제 관리책임기관 제 관리책임기관 제 관리적 제 관리책임기관 제 관리적		반 장	=	과장급 1명
가 기급생활 안정지원반 나 재단현장 환경정비반 다 기급 통신 지원반 다 기급 통신 지원반 다 시설과해 아 시설관리부서(건설도를 용급복구반 과, 하수과 등)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아에너지정책과 기능복구반 바 재난수습 홍보반 사 재단관리자원 지원반 아 교통대책반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카 사회질서 유지반 타 수색, 구조 아구급반 다 우건지공단 등 지역재 관리책임기관 파건 생		총괄반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5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기팀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주관부서 직원 2명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안정지원반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다) 긴급 통신 지원반 라) 시설피해 · 시설관리부서(건설도를 과, 하수과 등)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 에너지정책과 기능복구반 바) 재난수습 흥보반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차)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반 카) 사회질서 유지반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00 14 8 9	・총무과 직원 1명
환경정비반 다) 긴급 통신 지원반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바) 재난수습 홍보반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아) 교통대책반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차)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반 카) 사회질서 유지반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 복지정책과
지원반 · 정보콘텐츠과			'' '	• 자원순환과
일 무 반 2)협업 기능반 (a) 2)협업 기능박 (b)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 에너지정책과 기능복구반 가 개난수급 흥보반 사 개난관리자원 지원반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차 가원봉사지원 및 관리반 카 사회질서 유지반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안산소방서 - 육군제2506부대, K 한국전력, 한국전기안 공사, 한국가스안전사, ㈜삼천리, 한국산 단지공단 등 지역재 관리책임기관 파견			'' = '' = -	• 정보콘텐츠과
마)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에너지정책과 기능복구반 바)재난수습 홍보반 사기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아)교통대책반 ·교통정책과 자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차)자원봉사지원 및 관리반 카)사회질서 유지반 타)수색,구조 ·구급반 · 약조전력,한국전기안 공사, 한국가스안전 사, ㈜삼천리, 한국산 단지공단 등 지역재 관리책임기관 파견			'' ' ' ' ' ' '	·시설관리부서(건설도로
가능반 (a)	실 무 반	2)형 언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사) 재단관리자원 기원반 (아) 교통대책반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자) 사회질서 (유지반 (타) 수색, 구조 (·구급반 (*) 우군제2506부대, K*(한국전력, 한국전기안 공사, 한국가스안전 사, ㈜삼천리, 한국산 단지공단 등 지역재 관리책임기관 파견		기능반		• 대변인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카) 사회질서 유지반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약보건소 - 자치행정과 -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육지반 다) 수색, 구조 · 구급반 - 약산소방서 - 육군제2506부대, K 한국전력, 한국전기안 공사, 한국가스안전 사, ㈜삼천리, 한국산 단지공단 등 지역재 관리책임기관 파견		(u)		• 시민안전과
지역 자연 자연 가 한 보건소 * 양 보건소 * 가 한봉사 지원 및 관리반 * 가 하형정과 및 관리반 * 한원경찰서, 상록경찰서 유지반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약산소방서 • 육군제2506부대, K'한국전력, 한국전기안 공사, 한국가스안전 사, ㈜삼천리, 한국산 단지공단 등 지역재 관리책임기관 파견				·교통정책과
및 관리반 카) 사회질서 유지반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안산소방서 - 육군제2506부대, K'한국전력, 한국전기안 공사, 한국가스안전사, ㈜삼천리, 한국산 단지공단 등 지역재 관리책임기관 파견			서비스 지원반	· 양 보건소
유지반 타) 수색, 구조 · 간산소방서 · 육군제2506부대, K' 한국전력, 한국전기안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자연 자연 등 지역재 관리책임기관 파견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 안산소방서 · 육군제2506부대, K' 한국전력, 한국전기안			'' ' ' - '	•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한국전력, 한국전기안 공사, 한국가스안전 사, ㈜삼천리, 한국산 단지공단 등 지역재 관리책임기관 파견			'' ' ''	• 안산소방서
위		재난된	지역	• 육군제2506부대, KT,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 공사, 한국가스안전공 사,㈜삼천리, 한국산업 단지공단 등 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 파견 직 원

비고(근무방법)

-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 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 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곡	· 조정	성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	장
통	제	관	해당 재난	주관부서 국·소·센터	터·본부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약	법무를 담당하는 부	서의 장
			인 원	**	등 13+a+β명
			반 장	=	과장급 1명
			1) 상황 관리 총괄반 (12명)	 가) 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5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3명) 	재난상황관리반 직원 5명 재난종합상황실 직원 1명,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주관부서 직원 2명 자난 총괄부서 직원 1명 주관부서 직원 2명 자난 총괄부서 직원 2명
				라) 행정지원팀(1명)	・총무과 직원 1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시설관리부서(건설도로
실	무	반	2)협업	응급복구반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과, 하수과 등) ・에너지정책과
			기능반 (a)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공보관
			(u)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시민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양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안산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육군제2506부대, KT,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 공사, 한국가스안전공 사, ㈜삼천리, 한국산업 단지공단 등 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 파견 직 원	

-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 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 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자신성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u> </u>		
통 제 관		주관부서 국·소·센			
담 당 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			
	인 원		- 18+α+β명		
	반 장		과장급 1명		
		가) 재난정보	·재난상황관리반 6명		
		수집·분석 및 전	재난종합상황실, 재난		
		파, 재난상황관리			
		팀(6명)	관부서 직원 각 2명		
		H(0.9)	TTA 4E 4 28		
	1)상황관	나) 상황보고서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리 총괄반		, , , , , , , , , , , , , , , , , , , ,		
	(17+a명)	작성팀(3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17.4.67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석 평가팀	·주관부서 직원 5명		
		(7명)			
		라) 행정지원팀			
		(1명)	・총무과 직원 1명		
		가) 긴급생활			
			• 복지정책과		
		안정지원반 나) 재난현장			
			· 자원순환과		
		환경정비반			
		다) 긴급 통신	· 정보콘텐츠과		
		지원반 라) 시설피해	· 시설관리부서(건설도로		
11 17 .01		응급복구반	과, 하수과 등)		
실 무 반		마) 에너지 공급	n . 1 . 1 - 1 m - 1		
		피해시설	• 에너지정책과		
	0) =1 61 =1	기능복구반			
	2)협업기	바) 재난수습	· 대변인		
	능반(a)	홍보반			
		사) 재난관리자원	· 시민안전과		
		지원반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	· 양 보건소		
		서비스 지원반			
		차) 자원봉사 지원	· 자치 행정과		
		및 관리반			
		카) 사회질서	·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유지반			
		타) 수색, 구조	• 안산소방서		
		• 구급반			
			• 육군제2506부대, KT, 한국		
			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		
	지역 재단	!관리책임기관(β)	국가스안전공사, ㈜삼천리,		
		4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		
			원		
	l				

비고(근무방법)

-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 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 다.
-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 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다. 1		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	발조정	성관	재난안전을	· 총괄하는 담당 국	'장
통	제	관	해당 재난	주관부서 국·소·센	터·본부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역	업무를 담당하는 부	-서의 장
			인 원	총	÷ 18+α+β명
1			반 장		과장급 1명
				가) 재난정보	·재난상황관리반 6명
				수집·분석 및 전	
				파, 재난상황관리	총괄부서, 재난수습 주
				팀(6명)	관부서 직원 각 2명
			1)상황관		
			리 총괄반	나) 상황보고서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작성팀(3명)	·주관부서 직원 2명
1			(17+a명)	다) 상황관리총괄	
1				및 상황분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1				석 평가팀	· 주관부서 직원 5명
1					1 2171 72 00
1				(7명)	
				라) 행정지원팀	·총무과 직원 1명
1				(1명)	
				가) 긴급생활	• 복지정책과
				안정지원반	1:10=1:1
				나) 재난현장	· 자원순환과
				환경정비반	/1 건요한 기
				다) 긴급 통신	. 저 H 토 시 교
				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시설관리부서(건설도로
1				응급복구반	과, 하수과 등)
실	무	반		마) 에너지 공급	
l -		_		피해시설	• 에너지정책과
				기능복구반	, , ,
1			2)협업기	바) 재난수습	
			능반(a)	홍보반	• 공보관
			이건(W)	사) 재난관리자원	
					·시민안전과
				지원반	원무그토과 레즈크토코
				아) 교통대책반	•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자) 의료·방역	· 양 보건소
				서비스 지원반	
				차) 자원봉사 지원	· 자치행정과
				및 관리반	
				카) 사회질서	·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유지반	22021,07021
				타) 수색, 구조	· 안산소방서
				• 구급반	EE-0.1
					│ ・육군제2506부대, KT, 한국
					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
			지연 제나	난관리책임기관(β)	국가스안전공사, ㈜삼천리,
			^17 /Wil	:::47 B/12(P)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
					원
					_
비고	(근무	근바	且)		

-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 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 다.
-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 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지진(해일).화산 시 편성기준

가. 안산시 비상단계

1)상황관리 중괄반 (5명) 대난정보 수 집 · 분석 및 전파, 재난상 황관리팀(5명) 전파, 재난수습 주관부 직원 2명 자신수급 주관부 직원 2명 사건 기급생활 안정지원반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다) 긴급 통신 지원반 라) 시설피해 · 시설관리부서(도로	본 부 장	부 장 시장					
통 제 관 해당 재난 주관부서 국·소·센터·본부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인 원 총 6+a명 반 장 재난종합상황실 팀장 또는 담당 재난정보 수 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 황관리팀(5명) · 재난수급 주관부/ 직원 2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정보콘텐츠과 라) 시설피해 · 시설관리부서(도로	차 장	· 장 부시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인 원 총 6+a명 반 장 재난종합상황실 팀장 또는 담당	총괄조정관	두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인원 총 6+a명 반장 재난종합상황실 팀장 또는 담당 · 재난상황관리반 5명 지난정보수 집 ·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5명) 전파, 재난상황관리[5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다) 긴급 통신 지원보 라시설과해 · 시설관리부서(도로	통 제 관	통 제 관 해당 재난 주관부서 국·소	·센터·본부의 장				
반 장 재난종합상황실 팀장 또는 담당 · 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종합상황 직원 1명, 자연재내 총괄부서 직원 2명 전파, 재난상 황관리팀(5명) · 복지정책과 · 사원순환과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다) 시설피해 · 시설관리부서(도로	담 당 관	·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 부서의 장				
* 개난정보 수 집 · 분석 및 전파, 재난상 환관리반 5명 전파, 재난상 황관리팀(5명) 전파, 재난수습 주관부 직원 2명 자)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정보콘텐츠과 지원반 라) 시설피해 · 시설관리부서(도로		인 원	총 6+α명				
1)상황관리 총괄반 (5명) 대난정보 수 집 · 분석 및 전파, 재난상 황관리팀(5명) 작원 1명, 자연재 총괄부서 직원 2명 대난수습 주관부 직원 2명 기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나 개난현장 환경정비반 다 긴급 통신 지원반 라 시설피해 · 시설관리부서(도로		반 장 재난종합상	황실 팀장 또는 담당				
안정지원반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다) 긴급 통신 지원반 라) 시설피해 ・ 시설관리부서(도로		1)상황관리 집·분석 및 총괄반 집·분석 및 (5명) 전파, 재난상	- 재난종합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지원반 - 지설파레 - 시설관리부서(도그			• 복지정책과				
지원반 · 정보콘텐츠과 라) 시설피해 · 시설관리부서(도:		1, 1, 2, 2, 3	• 자원순환과				
			·정보콘텐츠과				
86716 2671, 311-1 87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시설관리부서(도로 교통과, 하수과 등)				
실 무 반 피해시설 · 에너지정책과 기능복구반		반 피해시설	• 에너지정책과				
2)협업 기능반(a)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대변인		2)협업 호비바	·대변인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시민안전과		사) 재난관리자원	• 시민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아) 교통대책빈	•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양 보건소			・양 보건소				
차)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 단원경찰서, 상록 유지반 찰서			·단원경찰서, 상록경 찰서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비고(근무방법)		• 구급반	• 안산소방서				

비고(근무방법)

-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안전과에 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지진(해일).화산 시 편성기준 가. 안산시 비상단계

본 부 장	시장		
	부시장		
		총괄하는 담당	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 주관부서 국·소·센터·본부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역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인 원		총 6+a명
	반 장	재난종합상:	황실 팀장 또는 담당
	1)상황관리 총괄반 (5명)	재난정보 수 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 황관리팀(5명)	・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종합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시설관리부서(도로
		응급복구반	교통과, 하수과 등)
실 무 반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에너지정책과
	2)협업 기능반(a)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공보관
	702(4)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시민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양 보건소
		차)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단원경찰서, 상록경 찰서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안산소방서

-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안전과에 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	- 장	부시장				
총곡	· - - -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 주관부서 국·소·센터·본부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인 원	a a	= 13+a+β명		
			반 장		과장급 1명		
				가) 재난정보 수집	· 재난상황관리반 직원 5명		
				·분석 및 전			
				파, 재난상황	난 총괄부서 2명, 재난수		
				관리팀(5명)	습 주관부서 2명		
			1) 상 황 관	다) 상황보고서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리 총괄반	작성팀(3명)	·주관부서 직원 2명		
			(12명)	라) 상황관리총괄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및 상황분석	· 주관부서 직원 2명		
				평가팀(3명) 마) 행정지원팀			
				(1명)	・총무과 직원 1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복지정책과	•목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 자원순환과			
			환경정비반	16661			
			다) 긴급 통신 지원반	·정보콘텐츠과			
			2)협업기	라) 시설피해	· 시설관리부서(도로교통과,		
				응급복구반	하수과 등)		
식	무	ijŀ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에너지정책과		
				기능복구반 바) 재난수습			
			능반(a)	홍보반	• 대변인		
			0 ±(u)	사) 재난관리자원	시 미 시 기 기		
				지원반	• 시민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양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유지반	eeoen, 090en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안산소방서		
				1月世	○ 그레OEOCH - 11 TZT = 1 그		
					• 육군제2506부대, KT, 한국 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		
			지역 재니	난관리책임기관(β)	전역, 완곡선기인선증사, 안 국가스안전공사, ㈜삼천리,		
				errurie(p)	하국산업단지공단 등 지역재		
					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 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 다.
-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 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	정관	재난안전을	· 장			
통 제	관	해당 재난 주관부서 국·소·센터·본부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	-서의 장		
		인 원	ङै	÷ 13+α+β명		
		반 장	3	과장급 1명		
		1)상황관리 총괄반 (12명)	관리팀(5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나) 재난현장	 복지정책과 자원순환과 		
	실 무 반		환경정비반 다) 긴급 통신 지원반 라) 시설피해	· 정보통신과 · 시설관리부서(도로교통과,		
실 무			응급복구반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하수과 등) ・에너지정책과		
		2)협업기 능반(a)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공보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시민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철도교통과,대중교통과 · 양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안산소방서		
		지역 재닌	·관리책임기관(β)	· 육군제2506부대, KT, 한국 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 국가스안전공사, ㈜삼천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역재 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	무바	H)				

-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 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 다.
-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 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ㅂ	미상2	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필	발조기	성관	재난안전을	· 총괄하는 담당 국	· 장
통	제	관	해당 재난	주관부서 국·소·센	터·본부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역	업무를 담당하는 부	-서의 장
			인 원	충	÷ 18+α+β명
			반 장		과장급 1명
					・재난상황관리반 6명
				1) -101-21-11 6-21	
				나) 재난정보 수집	재난종합상황실, 재난 총
				· 분석 및 전파, 재	괄부서,
				난상황관리팀(6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각 2명
			1) 상 황 관	-1	N-1
			리 총괄반	다) 상황보고서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17+a명)	작성팀(3명)	·주관부서 직원 2명
				라)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주관부서 직원 5명
				평가(7명)	
				마) 행정지원팀	・총무과 직원 1명
				(1명)	
				가) 긴급생활	· 복지정책과
				안정지원반	, , , , ,
			나) 재난현장	• 자원순환과	
			환경정비반	/10227	
			다) 긴급 통신	• 정보콘텐츠과	
			지원반	* 78보곤핸즈파	
				라) 시설피해	·시설관리부서(건설도로과,
				응급복구반	하수과 등)
실	무	바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에너지정책과
				기능복구반	111011
			2)협업기	바) 재난수습	
			능반(a)	. ,, ,, ,, ,, ,,	• 대변인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시민안전	· 시민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양 보건소
				차) 자위봉사 지원	
				,,,,,,,,,,,,,,,,,,,,,,,,,,,,,,,,,,,,,,,	· 자치행정과
				및 관리반	
				카) 사회질서	·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유지반	
			타) 수색, 구조	· 안산소방서	
				• 구급반	
					· 육군제2506부대, KT, 한국
					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
					국가스안전공사, ㈜삼천리,
			지역 재닌	난관리책임기관(β)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
					원

-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 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 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ㅂ	미상2	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필	발조기	성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	주관부서 국·소·센	터·본부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역	업무를 담당하는 부	-서의 장		
			인 원	- 3	÷ 18+α+β명		
			반 장	:	과장급 1명		
				나) 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재	· 재난상황관리반 6명 재난종합상황실, 재난 총 괄부서,		
			1)상황관	난상황관리팀(6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각 2명		
			리 총괄반 (17+a명)	자서티(9명)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주관부서 직원 2명		
				라)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7명)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주관부서 직원 5명		
				마) 행정지원팀 (1명)	・총무과 직원 1명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시설관리부서(건설도로과,		
				응급복구반	하수과 등)		
실	무	반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에너지정책과		
			2)협업기 능반(a)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공보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시민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양 보건소		
				차) 지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안산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구급반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육군제2506부대, KT, 한국 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 국가스안전공사, ㈜삼천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 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 다.
-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 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별표 4]

<u>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u>(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3	1 -2	1	v) =)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골	발조기	성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	주관부서 국·소·센]터·본부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역	업무를 담당하는 부	부서의 장			
			인 원	총	- 10+α+β+γ ¹³			
			반 장		과장급 1명			
			1)상황관 리 총괄	(3명)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반 (9명)	나) 수습상황 파악팀 (6명)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2)협업기 능반(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정보콘텐츠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시설관리부서(건설도로과, 하수과 등)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에너지정책과			
실	무	반		바) 재난수습 홍보반	·대변인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시민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양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타) 수색 구조ㆍ구급반				
		재난디	귀응협업반(β)	• 육군제2506부대, KT, 한국 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삼천 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 견 직원				
			현 <i>건</i>	항지원반(ɣ)	·해당 재난관리 실·국 소 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 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 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4]

<u>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u>(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 총괄하는 담당 >			
통 제 관		해당 재난 주관부서 국·소·센터·본부의 장			
담 당 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			
	인 원		- 10+α+β+γ명		
	반 장		과장급 1명		
		가) 상황관리			
	1)상황관	총괄팀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리 총괄	(3명)	- 세인구함 구원구시 즉원 23		
	반 (9명)	나) 수습상황 파악팀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6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2)협업기	가) 긴급생활	Hələlələl		
	능반(a)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 자원순환과		
		환경정비반	- 시 전단 전기		
		다) 긴급 통신	• 정보통신과		
		지원반			
		라) 시설피해	· 시설관리부서(건설도로과,		
		응급복구반 마) 에너지 공급	하수과 등)		
		피해시설	• 에너지정책과		
		기능복구반			
		바) 재난수습	• 공보관		
실 무 반		홍보반	<u> </u>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시민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자) 의료·방역	<u> </u>		
		서비스 지원반	・양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기원체자기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유지반	.,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산소방서 ・ 육군제2506부대, KT, 한국		
			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케나-	내응협업반(β)	한국가스안전공사, ㈜삼천		
	게진	по внд(Р)	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		
			견 직원		
	현건	당지원반(γ)	・해당 재난관리 실·국 소 속 직원		
2 (= 7 : 2	1		ন পাৰ		

-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 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